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3. 안 건 요 지:별 첨

4. 검 토 의 견: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춘 용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본 조례 안은 2008년 10월 2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0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대전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의 기반을 구축 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대전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나. 대전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의 의장,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와 지원에 대하여 정함(안 제10조).
- 라. 대전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3.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 안은

평생교육 진흥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문 13조와 부칙으로 축조되어 있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안 제1조에서는 제정목적을, 제2조부터 제9조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0조 및 제11조 에서는 평생교육사업과 평생교육 진흥원 지정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를, 제12조에서는 평생교육진흥사업 유공자 및 기관·단체에 대한 표창 조항을, 제13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 안 검토결과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에 있어 수당 등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와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진흥원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조례안 제11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법령입안기준에 맞도록 수정하고, 제12조 표창과 관련하여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민간인 표창을 수여할 수 있어 조문의 실익 대비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부상이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